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규정

2015. 12. 30. 제2008호  
개정 2016. 12. 26. 제21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경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의 영문 명칭은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Laboratory Safety : KNU CLS “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26.>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반 업무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등 제 규정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에 관한 관리 <개정 2016.12.26.>
6. 연구실 실험폐수 및 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관리 <개정 2016.12.26.>
7. 연구실 생물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8.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구성 및 역할)**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과학기술분야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12.26.>

② 센터에는 직원, 조교, 계약직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2.26.>

③ 센터의 업무는 「경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26.>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연구산학처장, 사무국장, 교무부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③ 임명직 위원은 과학기술분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2. 센터의 규정 개정 및 예·결산
3.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의 수립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삭제 2016.12.26.>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규정 제200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2132호, 2016.12.2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운영위원회)의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